

「2025년 진주형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사업」 모집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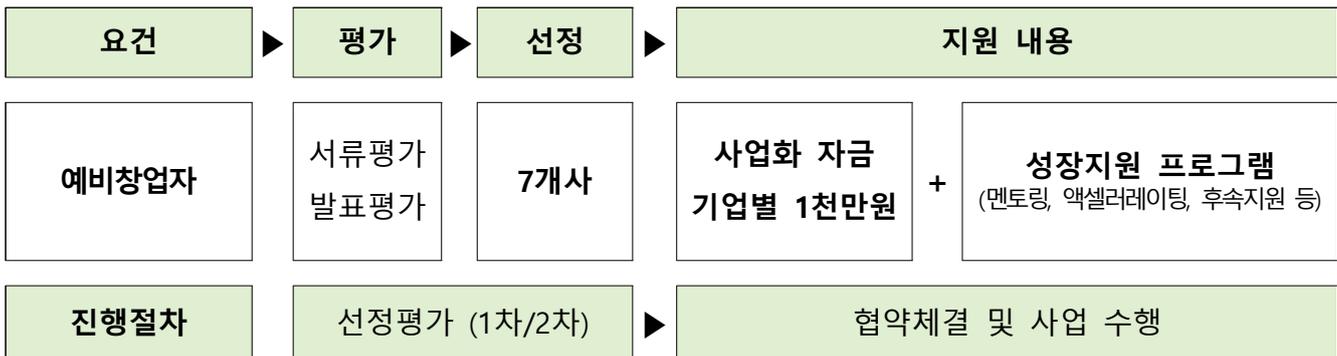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초기 사업화 자금지원 및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진주형 창업사관학교 지원 가능기업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2025년 진주형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5년 3월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년 진주형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3. ~ 2025.12. ※ 선정기업 협약기간 별도 안내
- 지원대상 : 전국단위 예비창업자
 - ※ 신청일 기준 진주시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수행중인 기업 제외
 - ※ 사업선정 시 본점 주소지 진주창업지원센터 등록 필수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및 마케팅비 등
 - 창업인프라 : 지원센터 내 입주공간 제공(입주 필수, 개방형 제공)
 - ※ 입주기간은 사업화 협약기간과 동일하며 필요시 내부평가 후 연장
 - ※ 신규입주기업 모집 공고 시 독립형 및 다인실 지원 가능
 - 액셀러레이팅 : CORN 1~2단계, 맞춤형 컨설팅, 네트워킹 등
- 선정규모 : 7개사 이내

2 사업절차



※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기업 발굴 및 선정

□ 모집개요

○ 모집규모 : 7개사

○ 모집대상 :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

1) 신청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 단,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 세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

- ▶ 신청일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로,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2) 신청일 이전 기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폐업 1개월 이상 된 자

- 신청일 기준 소재지의 제한은 없음
- 단, 최종선정 기업은 협약종료 **1개월 이내에** 진주창업지원센터로 **사업자등록** 하여야 함
(※ **진주시 내 사업자등록 불이행 시 협약 해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 지원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등 준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No.	대상 업종	분류코드
1	일반유희주점업	56211
2	무도유희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대표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또는 기업

□ 신청 및 선정개요

- 신청기한 : 2025. 03. 10.(월) ~ 2025. 03. 24.(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경남창업포털\(https://www.gnstartup.kr/\)](https://www.gnstartup.kr/) 신청
- 평가절차 :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선정절차 : 각 단계별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기업모집 공고	요건검토	1차	2차	선정결과 발표	입주시기
	신청자격 요건검토	서면심사 (서류평가)	대면심사 (발표평가)	개별통보	
3.10.(월) ~ 3.24.(월)	3.25.(화)	3.26.(수) ~ 4.11.(금)	3.26.(수) ~ 4.11.(금)	4.14.(월)	협약일 ~ 4.30.(수)

-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접수건수에 따라 모집기간 연장 될 수 있음
- ※ 각 단계별 심사결과는 선정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 선정기준 : 각 단계별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구 분		세부 평가내용	배 점
문제인식 (30)		목표시장 분석 정도	10
		개발배경 및 필요성	20
실행가능성 (20)		창업아이템 현황(준비 정도)	10
		창업아이템의 실현(구체화) 방안	10
성장전략 (30)		사업화 추진전략	15
		사업 추진일정 및 자금조달계획	15
팀 구성 (20)		대표자(팀) 현황 및 보유역량	10
		외부 협력 계획	10
가산점(5)	진주시 예비창업자	신청일 기준 등본상 주소지 진주 관내	5
총 점			105

<진주형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사업 평가표(안)>

○ 제출서류

구분	목 록	
필 수	[양식다운] 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수행확약서, 개인정보동의서)	
	파일 1개로 병합 후 제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대표자)
		국세 완납증명서(대표자)
		지방세 완납증명서(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대표자)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대표자)		
발급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등		
해 당 시	폐업사실증명원(대표자)	
	수상실적 등 기타 실적자료	
보안해제必		

○ 문의처

- 진주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실 (upmu1003@ccei.kr / 055-291-9387)

□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최종선정 :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 최종 확정 및 개별 연락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5. 12월까지 (예정)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체결 불가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다.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 라. 검토결과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 마. 예비창업자로 최종 합격한 경우로서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미완료한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등 조치가능

- 가. 공고에 명시 된 기한 내 본점 또는 지점 주소지를 진주로 이전 불이행
- 나.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 다.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 라. 부도·폐업·회생·파산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
- 마.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중단' 판정을 받은 경우
- 바.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사.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창업자(신청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함)
- 아. 창업자(신청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2.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기업별 1천만원

- 총사업비 = 사업화자금 기업별 1천만원+총 사업비의 10%*창업자부담금

* (창업자부담금) 지원받은 사업화지원금의 사용시 발생하는 부가세 부분만큼은 창업자 개인 부담

< 지원항목 >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임차하는 비용 ※ 구매 불가
특허권/무형자산 취득비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한 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국내·외 박람회 참가(부스임차비) 등
지급수수료	창업아이템 사업화 및 기업경영을 위한 자문비 등
기타	기업에서 필요한 사항 맞춤형 지원(단, 지원가능 여부 검토 후 지원)

※ 사업운영을 위한 활동비, 여비등은 집행 불가

○ (CORN 프로젝트 교육)

- CORN project : Customer Oriented Re Novation : 고객지향혁신

- 사업방향 및 아이템 검증을 통한 고객지향형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선정기업 7개팀, 기업별 2회(※ CORN 1, 2 단계)

- 교육내용 : 고객문제 정의, 아이디어 수집, 해결안 개발, 고객반응 조사, 계획수립

○ (기업별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 (기업 맞춤형 컨설팅) 기업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성장지원단 연계 기업별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 (창업인프라) 지원센터 내 입주공간 제공(필수, 개방형 제공)

< 입주공간 보유현황 >

- ① (1인실) 독립형(10개), 개방형(10개)
- ② (다인실) 10개실

○ (사후관리 지원) 보육기업 등록 및 후속 사업정보 제공

○ (최종성과보고회)

- 행사기간 : 2026.12. 중

- 주요내용 : 팀별 사업 추진 주요 성과 발표, 네트워킹 등

4

유의사항

- 본 사업 선정기업은 진주시 및 진주창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3회 이상 필수 참석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 발생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음.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청구가 발생하면 부정이익 및 이자를 환수할 수 있고 추가로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음
- 최종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법령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 및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등에 대한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있음
- 부적절한 예산 사용(거래처, 예산 범위 초과 사용 등)은 환수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전, 결과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최종평가 후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음
- 협약종료일 1개월 이내 본점 주소지 진주창업지원센터 등록 완료 및 협약기간 내 액셀러레이팅(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최종성과보고회 등 지원사업 내 구성 프로그램 필수 이행 하여야 함. 미이행시 협약취소 및 사업비 환수, 추후 진주시 지원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붙임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업수행확약서 각 1부. 끝.

